숙명여자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02.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목 차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1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2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6

1. 재난 ····· 6

[1] 자연재난 ····· 6

[2] 사회재난 ····· 14

2. 안전사고 ····· 23

[1] 대학 안전사고 ····· 23

[2] 교육시설 안전사고 ····· 31

[3] 연구실사고 ····· 33

3. 감염병 확산 ····· 51

[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51

4. 범죄 ····· 56

[1] 일반범죄 ····· 56

[2] 성범죄 ····· 6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64

[1] 산업재해 ····· 64

[2] 중대재해 ····· 70

6. 기타 ····· 73

[1]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73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78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81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89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90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 목적

○ 우리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난관리체계 유지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

○ 교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활용

○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재난관리체계 유지

○ 재난 상황별 대응 교육(훈련)

○ 재난 시 즉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고등교육법」,「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숙명여자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 2가)				
전 화	02-710-9052	FAX	02-710-9058	홈페이지	sookmyung.ac.kr
총장	장윤금	총괄안전관리 책임자		이기석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9,830	2,419		12,249	

교직원 (명)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직원	합계	비고
	432	1,191	325	1,948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종합관리센터	기획팀,총무구매팀
1. 재난	자연재난	시설종합관리센터	보건의료센터
	사회재난	총무구매팀	학생지원센터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센터	총무구매팀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팀	관재팀
	교육시설안전	시설종합관리센터	총무구매팀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의료센터	총무구매팀
4. 범죄	성범죄	성평등상담소	총무구매팀
	일반범죄	총무구매팀	학생지원센터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팀	시설종합관리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팀	시설종합관리센터
6. 기타	비상사태	기획팀	총무구매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이메일
총장실	총장	장윤금	9603	yunkeum@sm.ac.kr
부총장실	부총장	박**	9215	jongsung@sm.ac.kr
기획처	기획처장	오**	7523	mjoh@sm.ac.kr
교무처	교무처장	이**	9644	leejh87@sm.ac.kr
입학처	입학처장	김**	7558	yjin@sm.ac.kr
학생처	학생처장	송**	7231	yssong@sm.ac.kr
경력개발처	경력계발처장	최*	7958	choichul@sm.ac.kr
사무관리처	사무관리처장	김**	9936	yonghua21@sm.ac.kr
국제처	국제처장	전**	9153	san@sm.ac.kr
디지털정보혁신처	디지털정보혁신처장	이**	7583	kiyonglee@sm.ac.kr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장	정**	9322	gechung@sm.ac.kr

□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1 자연재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주임	김**	9236, kwk5379@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과장	우**	9804, woo@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2 사회재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과장	우**	9804, woo@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팀원	보건의료센터	차장	이**	9147, eklee@sm.ac.kr	협조부서
2. 안전사고	1 대학안전사고	팀장	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최**	9032, sooyeon@sm.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센터	부장	김**	9268, kkw6509@sm.ac.kr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2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3 연구실사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직원	김**	9806, kty1347@sm.ac.kr	
		팀원	안전관리팀	직원	이**	9598, lkmne13@sm.ac.kr	
		팀장	관재팀	팀장	송**	9051, nixxong@sm.ac.kr	협조부서
3. 감염병확산	1 코로나-19	팀장	보건의료센터	센터장	임**	9572, myim@sm.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의료센터	차장	이**	9147, eklee@sm.ac.kr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4. 범죄	1 일반범죄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팀장	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최**	9032, sooyeon@sm.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센터	부장	김**	9268, kkw6509@sm.ac.kr	
	2 성범죄	팀장	성평등상담소	소장	이**	7260, ptlya@sm.ac.kr	주관부서
		팀원	성평등상담소	선임	김**	9938, mhkim0420@sm.ac.kr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협조부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2 중대재해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협조부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6. 기타	1 비상사태	상황실장	기획처	처장	오**	7523, mjoh@sm.ac.kr	주관부서
		상황반	기획팀	팀장	권**	9092, kyungmi@sm.ac.kr	
		행정반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행정반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행정반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 재난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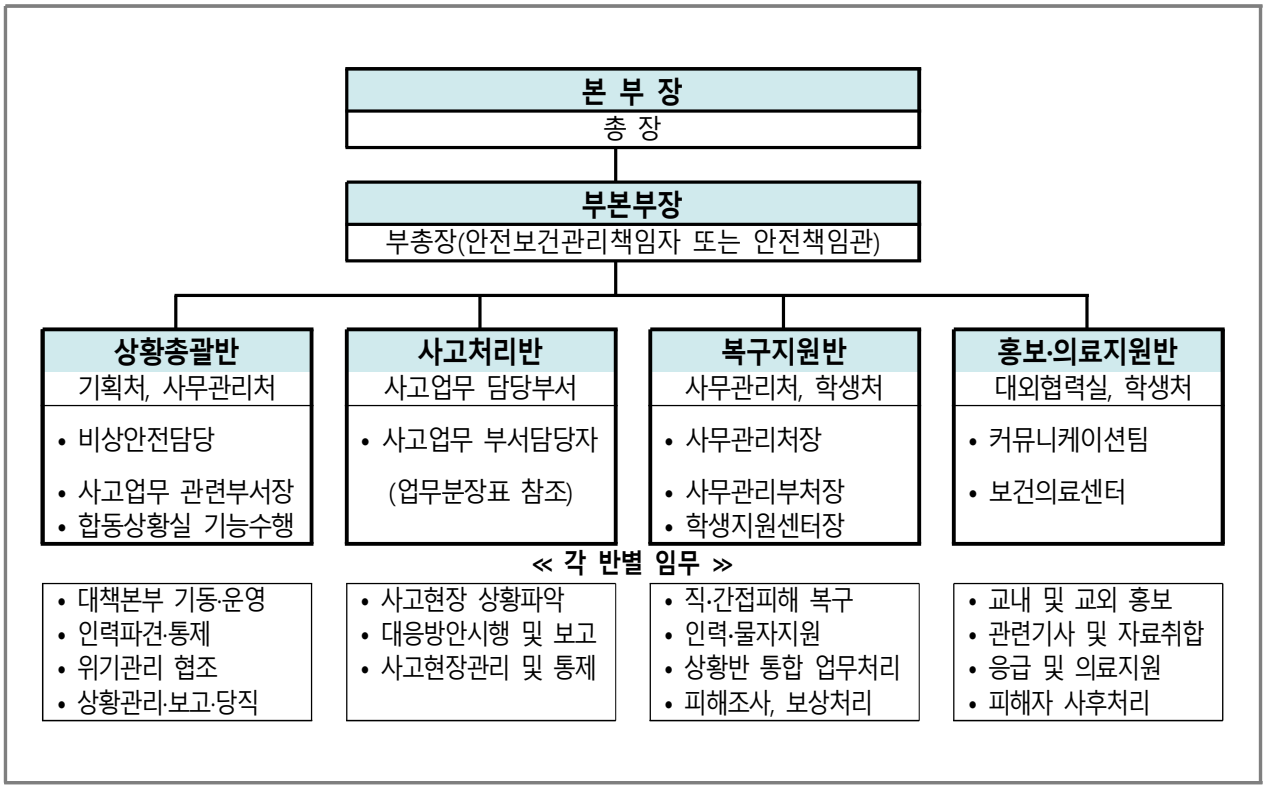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구축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통합상황실	재난관리본부
각 재난별 담당부서	야간대응	사태 악화 시 운영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각 재난별 담당부서	주야대응	주야대응

경찰서, 소방서	용산구청	서울시 종합상황실
용산경찰서 : 02-2198-0267 용산소방서 : 02-6943-1474	Tel. 02-2199-6114	Tel. 02-726-2071

Ⅱ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주임	김**	9236, kwk5379@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과장	우**	9804, woo@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 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 사전대책

○ **(자연재난별 기본 이행사항 공지)**

- 하절기 호우, 태풍, 낙뢰에 대비한 구성원 이행사항 공지
- 동절기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구성원 이행사항 공지
- 지진 관련 교육 영상 홈페이지 게시

○ **(시설물 사전 점검)**

- 건물옥상, 건물주변, 외곽 배수로 점검 및 청소
- 건물옥상 시설물, 장비 점검 및 고정 작업
- 각 건물 창호 및 출입문 잠금장치 점검 및 보수
- 노후 및 불안정한 설치물 점검 및 보수
-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준비
- 대설대비 염화칼슘, 모래함, 제설장비 준비
- 낙뢰 대비 각 건물 피뢰침 및 매설 접지 상태 점검
- 동파방지 물 배관 점검 및 보완
- 건물이나 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수리
- 건물 균열 발생 시 보수 및 보강

□ 재난시 대응

○ **태풍, 호우, 낙뢰, 대설, 한파 대응**

최초 목격자 신고	→	시설종합관리센터 총무구매팀 재난담당자 119	→	초동 대처 재난 상황 전파 보고 119 신고 확인

○ **지진 대응**

지진이 멈출 때까지 책상/탁자 아래에 피난	→	지진이 멈추면 넓은 공간으로 이동	→	피해상황 신고 시설종합관리센터 02-710-9050 통합운영실 02-710-9236, 9237 정문경비실 02-710-9219 119 신고

□ 자연재해 시 행동요령

○ **태풍, 호우**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근처나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대피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대피소와 비상연락망을 미리 숙지합니다.
- 전신주, 위험한 담장 부근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창문의 잠금상태를 확인하고 바람에 날아갈 물건들을 미리 제거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된 경우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퇴실 전에 창문과 출입문의 잠금상태를 확인합니다.
- 고층 건물의 옥상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낮은 지대에 가지 않습니다.
- 대피할 때에는 가스, 수도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립니다.
- 정전을 대비하여 손전등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과 대피방법을 미리 숙지합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 전기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 붕괴의 우려가 있는 노후건물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합니다.

○ **낙뢰**

-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낙뢰가 예상될 때는 건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외 활동 시 낙뢰 등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뢰가 예상될 때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5~10m 이상 떨어져서 대피하며, 자세를 낮추고 금속물질은 버립니다.
-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TV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 전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높은 곳은 위험하므로 낙뢰 발생 시 신속히 낮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신주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합니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머뭅니다.

※ 낙뢰를 맞았을 때 응급조치

-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절대로 피해자를 단념하면 안 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피해자는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떨 때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 119에 연락하고 피해자를 안정시킵니다.

○ **대설/한파**

- 퇴근 시 사무실의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니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손가락, 발가락, 귀,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의심해야 하며 바로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기온 강화 시 심장과 혈관 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 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 폐 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됩니다.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서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는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 · 발한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 · 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삼가야 합니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하여 감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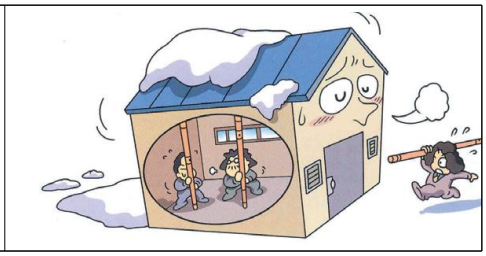

○ **지진 초기대응 요령**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책상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피할 곳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 대피 요령**
- 밖으로 나갈 때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을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넓은 공간(원형극장, 제1캠퍼스 옥외주차장 등)으로 대피합니다.
-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 대피 시 주의 사항
-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
- 지하층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외부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 **지진 대피 후 행동**
-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주변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의 사용이 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사무실/강의실/실험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체크합니다.
-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지역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종합관리센터 등)에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전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수도관의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급니다. 하수관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현재의 위치를 시설종합관리센터에 신고합니다.

□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 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용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과장	우**	9804, woo@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팀원	보건의료센터	차장	이**	9147, eklee@sm.ac.kr	협조부서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 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 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화재 예방·대응 대책

○ **사전 대책**

가. 소방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사무관리처장, 사무관리부처장, 시설종합관리센터팀장, 직원인사팀장, 총무구매팀장, 소방안전관리자
- 운영 :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 매분기 1회 이상 소집

나. 소방 안전교육

- 직원대상 : 연 1회 실시
- 학생 및 교원 대상 :
  연 1회 실시 - 이과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연 2회 실시 - 명재관, 국제관, 숙명인재관
- 영상물 홈페이지 게시

다. 자위소방대 훈련

- 연 1회 소집(자위소방대 편성 조정 및 상황에 따른 비상연락망 확보)
-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른 임무 숙지
- 화재 발생 시 대응 훈련

라.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 교내·외 소방시설 매년 2회 시행(소방점검 전문업체 위탁)
-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 및 수동소화설비/소화기/소화전 분기 1회 자체 점검
- 피난/대피시설 분기 1회 자체 점검

마. 구성원 기본 이행사항 숙지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소화기/소화전/화재경보 비상벨 위치
-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위치
- 화재 시 신고 전화번호 및 신고요령
- 화재 예방활동 및 피난통로(구) 불법 적치물 이동
- 실험실 안전수칙
- 불법 전열기구 사용 불가

○ **재난 발생 시 대응**

최초목격자 화재 신고	→	시설종합관리센터 02)710-9052 통합운영실 02)710-9236, 9237 정문경비실 02)710-9219 119	→	초기진화 - 화재전파/경보발령 119 신고 확인 자위소방대 소집 및 투입 경과사항 및 결과보고

○ **사후 대책**

가. 원인조사

- 용산소방서 및 용산경찰서 합동조사
- 소방대책위원회 소집

나. 사고보고

- 재난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다. 화재복구

- 시설종합관리센터에서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시행

라. 화재보험 청구

- 관재팀(710-9038),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자위소방대 임무**

분대	반	임무
본부분대 (통보연락반)	지휘반	대장 및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훈련반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경보반	119신고 및 교내 전파 관계기관(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용산보건소)통보
소수방분대 (초기소화반)	소화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수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분대 (소방대비유도반)	대피 및 반출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 이동
	경계반	출입인원 통제, 소방대 유도, 반출 물건 경비
	방호 및 복구반	전기 및 가스위험물 등 소화 활동 장애 요소 제거 및 복구
의료구호분대	의료반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등의 치료
	방독반	민방위 업무 수행
	후송반	사망자 안치 및 질식 등 중경상자 지정병원 후송

○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가. 초기화재 행동 요령

-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가까운 장소의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화재 전파를 합니다.
- 화재 초기진화에 실패하였으면 즉시 대피하고, 119와 시설종합관리센터에 신고합니다.

나. 신고요령

- 119로 전화하여 불이 난 장소의 주소, 건물명, 층수, 호실명,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소방서에 최종 접수가 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다. 대피 요령

- 비상구 및 계단을 통하여 대피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긴급대피를 할 경우는 피난구(문) 또는 대피로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연기나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수건 등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 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의 통로가 되어 굴뚝 역할을 하여 위험하므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라.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화재지점 가까운 곳의 바닥으로 옮깁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링 또는 타이)을 뽑습니다. 소화기를 든 상태에서는 손잡이가 안전핀을 눌러 안전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 소화기를 든 후 다른 손으로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하도록 합니다.
- 손잡이의 상하 레버를 힘껏 움켜 쥐 빗자루로 쓸 듯이 좌우로 분사합니다.

마. 소화전 사용법

- 2인 이상이 1개 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소화전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 소화전 함을 열어 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지점 가까이 이동합니다.
- 한 사람은 노즐 부분을 단단히 잡고 자세를 낮추어 화점을 향하도록 합니다.
-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노즐 부분을 잡은 사람을 돕습니다.
- 진화되면 소화전 밸브를 잠급니다.

□ 건물붕괴 예방·대응 대책

○ **사전 대책**

가. 건축물 정기점검

- 수시 점검(균열, 침하)
- 해빙기, 여름철, 결빙기 특별 점검
- 수시 점검 시 이상 유무 과다 발생 시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점검 실시

나. 건축물 관리 안전교육

- 분기 1회 건축물 붕괴 관련 교육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

다. 건축물 유지관리

- 수시 점검 시 균열, 침하 발생 부위 보수
- 전문기관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 컨설팅

○ **재난 발생 시 대응**

최초 목격자 신고	→	시설종합관리센터 02)710-9052 통합운영실 02)710-9236, 9237 정문경비실 02)710-9219 119	→	초기대응 119 신고 확인 경보 발령 보고

○ **사후대책**

가. 원인조사 : 관할소방서/경찰서/전문기관 합동조사

나. 사고보고 : 재난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다. 재난복구 : 시설종합관리센터에서 시행

라. 재난보험 청구 : 시설종합관리센터/총무구매팀/관련부서 협의 시행

○ **붕괴 발생 시 행동요령**

가. 붕괴 징조 포착 방법

-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될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 깨지듯이 날 때
- 개를 비롯한 동물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평소와 달리 불안할 때

나. 붕괴 시 건물 내부에 있을 때

- 건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합니다.
- 평소에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해 둡니다.

다. 붕괴 시 건물 외부에 있을 때

-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 위험이 없는 공터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건물의 붕괴가 발생하면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붕괴지역 주변을 이동할 때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라. 잔해에 깔렸을 때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휴대전화로 학교 시설종합관리센터, 경비실 및 119에 신고합니다.
- 가능한 혈액순환이 잘되게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줍니다.
-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예방·대응 대책

○ **사전 대책**

가. 황사/미세먼지 대비 사전교육

-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자료 메일 발송
- 보건의료센터 게시판에 자료 게시 및 매뉴얼 비치
- 황사/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게시
-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관련 자료 게시
-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황사발생 국민행동요령」을 기초로 대처방법 교육 및 홍보 : 단체 메일, 홈페이지 게시
- 리플렛, 스티커 배부

나. 교내 방역 및 위생관리

- 학교 실내외 방벽 등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및 방역
- 황사 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접종
- 교내식당 식품위생 관리 요청
- 황사 비상대책반 조직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확립

다. 재난 시 대응

-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 기상청의 황사·미세먼지 상황 발령 공지

- 홈페이지, e-mail, 문자를 통한 신속·정확한 공지
- 손 씻기, 황사 마스크 활용 방법 교육 및 홍보
- 야외 활동 및 건물 밖 수업 활동 자제 등 황사로 인한 건강 보호 홍보

라. 황사/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구분	황사강도	국민행동요령
약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정도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방진마스크 사용 2.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3.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정도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금지,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방진마스크* 사용 2.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3.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4.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5. 외출 시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개인 청결 유지
매우 강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금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3.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5.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을 착용함

마. 황사/미세먼지 발생 확인 및 통보

-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 라디오 등의 일기예보 확인
-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확인
- 기상청(www.kma.go.kr) : ☎ 02-2181-0900
- 기상예보 및 특보 안내 : ☎ 전국 국번 없이 131(기상상담전화)

○ **황사/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

가. 가정에서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
- 귀가 후 손발을 세척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 사용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제
- 실내외 청소로 신속하게 황사 제거

나. 학교에서

- 야외수업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및 각종 대회 및 행사 시기 조정
- 실외로 통하는 창문 및 출입문을 닫고 외부공기와의 접촉 차단
- 실내외 청소로 황사를 신속하게 제거
- 학교 급식 위생 철저
-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교육

다. 황사 예방 손 씻기 방법

라. 황사마스크 착용 방법

마.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미세먼지 예보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소방시설 안전관리비	31	33	32	96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32	32	32	96	
소화기 구입 소모품비	2	1	2	5	
계	**65**	**66**	**66**	**197**	

2. 안전사고

1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최**	9032, sooyeon@sm.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센터	부장	김**	9268, kkw6509@sm.ac.kr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사전 대책**

가. 학생 진단활동 안전(2023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나. 교내 행사
- 행사계획표 점검
- 관할 행정기관에 재해대처계획신고서(안전운영계획서) 제출
- 행사장 점검
- 안전시설물 점검
-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점검
- 의료지원팀 배치
-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 수립

다. 교외 행사
- 행사계획표 점검
- 관할 행정기관에 재해대처계획신고서(안전운영계획서) 제출
- 행사장/숙박시설 점검
  · 최근 1년 이내의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 결과 확인
  ·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점검 결과 확인
- 행사장/숙박시설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 계약조건에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 인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 적시
  · 운전자의 적격 여부
  · 당일 차량이 계약 차량인지 확인
- 참가 학생 보험 가입
  · 공식 행사일 경우 학생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캠퍼스 보험 혜택
  · 공식 행사가 아닌 경우 여행자보험 등 가입
- 참가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 음주, 폭행 등 단체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 행사장 도착 시 행사장, 숙소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교육
  ·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교육

- 사전 답사
  · 보험가입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현장 지도
  · 담당부서
  · 지도교수

○ **재난 시 대응**

재난사항 신고	→	학생지원센터 710-9034 112, 119	→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학생지원센터 조치

○ **사후 대책**

가. 현장 확인 및 대처
- 학생 피해 상황 파악
- 보호자 연락
- 응급처치
- 소방서, 경찰서 등 신고

나. 재난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다. 원인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라. 보험 청구

○ **교외 행사 시 점검 사항**

가. 교통 안전

구분	항 목	점검(교육) 내용	확 인
차량	차량 서류	○ 차량 보험가입 여부 ○ 정기검사필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	
	차량상태점검	○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 확인 ○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 확인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운전자	○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학생	안전교육 비상대처	○ 안전벨트 착용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 확인	
구급약	약품비치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 ○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 파악	
연락망	비상연락망	○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확인 ○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나. 숙소 점검

단 계	점검사항	확 인
답사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 행사 당일 적정 수용인원 확인 ○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 확인 ○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 설치 확인 ○ 지자체 안전점검 여부 ○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 확보 ○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	
도착후	○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 ○ 필요한 구급약품 준비	

○ 생활안전 – 교내식당(식중독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재팀	팀장	송**	9051, nixxong@sookmyung.ac.kr	주관부서
팀원	관재팀	직원	박**	9038, daebong@sookmyung.ac.kr	
업체	본푸드서비스 (집단급식소)	점장	최**	02-719-2948 bssookmyung@bongroup.co.kr	위탁업체
업체	라이프푸드 (휴게음식점)	담당자	김**	7770, kimth2076@naver.com	
업체	스타벅스 (휴게음식점)	점장	서**	kellysuh@starbucks.co.kr	

□ 교육

위탁운영사 내부 교육 및 관리 지도	- 식품연구소 및 지사 위생담당자 현장 방문 위생관리자 및 현장 종사자 위생교육 및 훈련 실시 - 신규 종사자 사전 위생 안전교육 완료 후 업무 배치 - 매일 작업시작 전 전 종사자 대상 위생 안전교육 실시 - 작업 시작 전 모든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문진 및 점검으로 확인 - 개인 위생관리 교육 실시(건강진단서 확인, 위생복 관리, 위생적인 습관 및 행동 교육)

□ 식재료 안전성 확보

구분	대처방안
식재료 위생관리	- 신규 등록업체 위생평가 실시 및 평가확인서 보관 - 기존 거래업체 정기 위생평가 실시 - 신규 및 정기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유도 - 지하수 사용업체 특별관리 - 철저한 검수관리를 통한 식재료 품질 상태 확인
식재료 안전성 검사	- 물류센터 입고 및 사업장 직송 식재료 사전 안전성 검사 실시 - 식재 위험성, 사용 빈도, 국·내외 위해 정보, 클레임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매월 검사대상 선정 안전성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부적합 식재료는 거래 중단 (검사기준 및 규격은 식품공전 등 관련 법규 및 내부 기준 적용)

□ 현장 위생관리

<table>
<tr><th>구분</th><th>대처방안</th></tr>
<tr><td>위생관리
준수 철저</td><td>- 교육부 및 식약처 위생관리 기준서 사업장 배포 및 공유</td></tr>
<tr><td>사업장
위생점검</td><td>-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table>
<tr><th>구분</th><th>대상</th><th>점검 빈도</th></tr>
<tr><td>정기점검</td><td>전 사업장</td><td>반기 1회 이상</td></tr>
<tr><td>지도점검</td><td>신규 오픈
신입/초임점장 등</td><td>발생시</td></tr>
<tr><td>특별점검</td><td>위생 부진사업장
시기/테마/교차점검 등</td><td>비정기
(필요시)</td></tr>
</table>
- 사업장 조리 식품 및 환경 안전성 검사</td></tr>
<tr><td>HACCP 관리</td><td>- HACCP 적용 식품 우선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지정 유지. 관리
- 사업장 위생관리자 정기 HACCP교육 실시</td></tr>
</table>

□ 사고 대응

유형	·식중독 발생
현장대책	·급식중단 조치 ·의심식품 압류 및·사용금지 조치 ·식재료 공급 업체 파악
후속조치	·수거·검사의뢰 ·검수관리 철저 ·동일 식재료 사용업체 환자 발생 여부 확인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치료 ·도시락 등 대체 급식 ·원인 식품 제조 유통 추적조사 재발 방지
확인사항	·식중독균 검축 ·기준·규격위반 ·기타 위반사항
예방·사후관리	·식재료 업체 사전 현장 실사 및 정기 관리 ·위반업체 정보공개 ·식재료 전처리 위생 관리 철저 ·가열조리 위주 식단 편성 ·유통기한 확인 등 검수 관리 철저 ·행정처분 의뢰

□ 식중독 환자(학생) 발생 시 대응방안

<table>
<tr><th>구분</th><th>대처방안</th></tr>
<tr><td>대응방안</td><td>
- 단계별 대응방안
<table>
<tr><th>구분</th><th>대응방안</th><th>점검빈도</th></tr>
<tr><td>평상
체제</td><td>- 학생 식중독 예방 사전교육 및 홍보 실시</td><td>일정표 의거</td></tr>
<tr><td>경계
체제</td><td>- 식중독 환자 치료 및 후송
- 식당 운영 잠정 중지(조사 → 결과 기간)
- 식자재, 음식물 관리 철저
- 식중독 의심 음식물 수거 및 조사 의뢰</td><td>사실확인
분석평가
대책수립
자원준비</td></tr>
<tr><td>긴급
체제</td><td>- 식당운영 폐쇄 → 도시락 등 대체 급식 지원
- 식중독 원인 추정 및 환자 추가 발생 확인
- 식중독 재발 방지 교육 실시</td><td>사실확인
대책반 구성
사고대응
재발방지</td></tr>
</table>
- 식중독 위생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후 관련자 교육 실시
- 보고 절차
· 1차 : 유선으로 즉시 교내 담당 부서 담당자, 팀장 보고, 관할 보건소 및 위탁업체 위생안전팀 보고
· 2치 : 유선 및 서면상 경과 수시 보고(사고 상황 변경 시)
· 3차 : 학교 당국 및 보건소, 위탁업체 해당 부문 임원까지 정식 서면 보고
- 준수 지침
· 교내 담당부서 및 위탁업체 위생안전팀에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받도록 하며, 사고내용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
· 미보고, 보고 지연, 보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 철저
- 사건 사고 보고 시 포함 내용
· 발생일시, 발생 장소
· 사고자 인적 사항 : 성명, 소속 등
· 사고 현황 및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 기록
→ 환자 증상, 취식 메뉴, 동일 음식 섭취 고객 현황조사, 외부음식 섭취 여부 등
· 향후 대책
· 기타 특이사항
</td></tr>
<tr><td>응급처치</td><td>
- 환자를 편안히 안정시킨다.
- 환자에게 상당량의 물을 주도록 하되, 맹물이 아닌 이온성 음료를 마시게 한다.
- 환자의 상태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도움으로 수분 공급을 받도록 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한자가 토한 것이나 남은 음식은 비닐봉지에 담아 전문의에게 제출
</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대처방안</th></tr>
<tr><td>기타</td><td>- 사고 대비 관련 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유지 여부 확인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보상한도액</th></tr>
<tr><th>1인당</th><th>1사고당</th><th>총보상한도액</th></tr>
<tr><td>본푸드(순헌관)</td><td>1억원</td><td>5억원</td><td>5억원</td></tr>
<tr><td>라이프푸드(명신관)</td><td>1억원</td><td>1억원</td><td>1억원</td></tr>
<tr><td>스타벅스(프라임관)</td><td></td><td></td><td>12억원</td></tr>
</table></td></tr>
</table>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 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 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 저하에 따른 이용 제한 및 학습 차질 초래

○ **(주변시설)** 우리대학 경계 인접부지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 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 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 구성원 통학 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1	1	0	0.4
재산피해(백만원)		0	0	1.5	0	0	0.3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1	1	0	0.4
	계	**0**	**0**	**1**	**1**	**0**	**0.4**

□ 예방·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유지관리점검, 안전 점검 및 정밀 점검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 성능 유지관리

- 우리대학은 기존 건물에 대해 2023년 르네상스플라자, 본관 및 교수회관, 대학원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할 계획

○ **(주변시설)** 우리대학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우리대학 경계 인접부지 공사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필요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개보수공사	600	300	300	1,200	
긴급보수공사	114	110	120	344	
교육시설안전 인증	0	100	260	360	
계	**714**	**510**	680	1,904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직원	김**	9806, kty1347@sm.ac.kr	
팀원	안전관리팀	직원	이**	9598, lkmne13@sm.ac.kr	
팀장	관재팀	팀장	송**	9051, nixxong@sm.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 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 사고 예방대책**

가. 연구실 안전 점검

-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 실시
- 대행업체를 통한 연 1회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연구실 안전교육

- 신규 연구 활동 종사자 교육 연 2회 실시

○ 기존 연구 활동 종사자 교육 연 2회 실시

○ **연구실 사고유형별 대응 요령**

○ **화학 분야**

가. 화학분야 사고 예방법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 폐액은 종류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고, 폐액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
- 폐액 처리 및 폐액 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나. 화학분야별 사고 대응요령

- 주변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 담당 부서(안전관리팀:02-710-9806, 경비실:02-710-9219)에 상황 신고
- 화학물질에 노출·접촉 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15~20분 이상 세척(금수성 물질이나 인 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시 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 초기진화를 실시하고, 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화학물질 누출·접촉>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팀 02-710-9806, 경비실 02-710-9219, 필요시 소방서, 병원)에 약품 누출 발생 사고 상황신고 (위치, 약품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 금수성물질이나 인 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 부서와 함께 정화 및 폐기작업 실시	-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 (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다. 화학물질 화재·폭발

<유기용제 용기 파열>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 보관 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기진화 실시 - 2차 재해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물 분무 - 금수성 물질이 있는 경우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 실시 - 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 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 호흡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실시 -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필요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 사고물질의 누설, 유출 방지가 곤란한 경우 주변의 연소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 -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비산 및 용기의 파손, 전도방지 등 조치 강구 - 소화를 하는 경우 중화, 희석 등 재해조치를 병행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 지정대피소로 집결한 인원 확인 (건물별 또는 연구실별) - 전기 및 가스설비 점검 후 공급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폐액통 파열로 화상 시>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각 폐액용기에 연구실명, 폐액 종류, 주의사항 등 라벨 부착 - 폐액 종류별 각각 분리 보관 - 폐액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 - 폐액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 폐액용기 운반용 기구 비치 - 폐액용기의 운반담당자 지정 및 운반 절차 등 수립·시행 - 폐액용기 임시 저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사고 상황 신고(위치, 폐액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 부상자의 폐액 접촉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 부서와 함께 정화작업 실시	-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 (흡착제, 흡착포, 흡착휀스, 중화제 등 사용)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 **가스 분야**

가. 가스분야 사고 예방법

- 가연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옥외저장소에, 독성 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실린더캐비닛 내 설치
- 가연성 가스검지기 설치 및 관리
-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 가스용기 고정 장치 설치
-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나. 가스 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가스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전파 및 건물 내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 독성가스 누출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밸브차단 및 환기 등 조치
- 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
-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하고, 대피 시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가연성 가스 누출 폭발>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가연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옥외장소에 설치 - 가연성 가스 검지기 설치 및 관리 - 가스용기 고정 장치 설치 -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 옥외 설치 가스 배관에 대한 부식 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 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실시 - 가스누출 경보장치의 주기적인 점검·교정 실시
사고 대응 단계	-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차단 및 환기 등 적절한 조치 취함 - 누출 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 방송을 통한 사고 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 가스 농도 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 사고 현장에 접근금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필요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 대량 누출의 경우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화원 제거(밸브 차단, 주변 점화원 제거, 충격 등 금지)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전기 및 가스설비 점검 후 공급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독성 가스 누출>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독성가스 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실린더 캐비닛 내 설치 -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사용 관리 -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 주요 가스 사용 현황 및 정보 파악 - 옥외 설치 가스 배관에 대한 부식 여부 등 이상 여부 점검 - 독성가스저장소 등 가스설비의 주기적 점검 시행

사고 대응 단계	- 가스누출 사실 전파 및 건물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 사고 적응성 개인보호구(방독면 등)를 신속하게 착용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하여 밸브차단 - 유독 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게 함 - 누출 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 - 대피 시에는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 방송을 통한 사고 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 가스 농도 측정기를 이용해 누출 가스 농도 측정 - 사고 현장에 접근금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적정 개인보호구(방독면 등) 착용 후 가스설비 누출 원인 제거 - 필요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신고
사고 복구 단계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누출지역의 정상 복구를 위하여 잔류 가스 완전 제거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시행	

○ **전기분야**

가. 전기분야 사고 예방법

-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 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 전기 관련 실험 시 안전거리 확보
-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및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달린 제품을 사용

나. 전기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감전 사고에 대비, 절연장갑 착용)
- 감전 사고의 경우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 해당 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 등)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119, 병원 등)에 신고

<감전>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 비규격 및 안전 인증 미취득 전기 제품 사용 금지 -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 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 전기 관련 실험 시에 안전거리 확보 -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 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 -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필요시 병원에 신고	- 사고 현장 주변 접근금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여부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AED) 실시 - 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하여 사고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전기화재>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 제품 사용 금지 -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	- 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실시 -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 보호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 사고 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 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 화재 발생 시 해당 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 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진화 - 필요시 관계 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 사고 현장 주변 접근금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사고 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의 분전반 전원 차단 - 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하여 사고원인 제거 재차 확인 -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 **생물 분야**

가. 생물 분야 사고 예방법

-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은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둠
- 연구실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 체계 구축
-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해 실험

나. 생물 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병원체 유출 사고 시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탈의하여 멸균 봉투에 넣고 소독제 등으로 오염 부위 소독
- 부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 및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후 보건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119 신고
- 병원체 유출 사고 시 흡수지로 오염 부위를 덮은 뒤 그 위에 소독제를 충분히 부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 후 퇴실
- 2차 피해 우려 시 접근금지표시를 하여 2차 유출 확대 방지
-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 사고 시 팬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밑에까지 내린 뒤 대피
- 생물안전작업대 내 유출 사고 시 생물유출사고 대응 도구 내에서 새 장갑과 1회용 보호구를 착용 후 탈 오염작업을 실시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사용한 물질 폐기
- 동물에 물리거나 바늘 등에 의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 부위에 식염수나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혈 시 지혈
- 생물안전 관리자, 동물실험실 관리자 등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 대응 지시를 받음

<병원성 물질 유출>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은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둠 - 연구실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 (biological spill kit)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 체계 구축 -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여 실험	- 생물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인 사전교육 및 연간교육 이수 - 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감독 - 생물실험 시설 주변에 대한 정기 소독 등 감염방지 대책 시행 - 생물 실험 후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정한 폐기 수립 및 시행 - 생물실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조치
사고 대응 단계	-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탈의하여 멸균봉투에 넣고 오염부위를 세척 한 뒤 소독제 등으로 오염부위 소독	- 사고 접수 후 응급치료 도구와 생물안전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을 가지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

사고 대응 단계	- 부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 및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후 기관 내 보건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소방서 신고 - 흡수지로 오염 부위를 덮은 뒤 그 위에 소독제를 충분히 부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 뒤 퇴실 - 2차 피해 우려 시 접근금지 표시를 하여 2차 유출 확대 방지	- 사고 현장 출동 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사고 수습 지원 (마스크, 1회용 실험복, 안전장갑, 1회용 덧신 등) - 사고 현장 접근금지 테이프 설치 및 현장 통제 - 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소집 및 사고 대책위원회 구성
사고 복구 단계	- 오염된 연구실 탈 오염 처리 및 오염 확산 방지 처리 - 생물안전사고 부상자의 2차 획득 감염 사고 관찰, 진단 및 치료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 발생지 탈 오염 처리 및 오염 확산 방지 확인 후 연구실 사용 재개 결정 - 부상자의 2차 획득 감염 여부 확인 -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확립된 사고 방지안 실행을 연구실 책임자 및 사고 유발자에 지시하고 이의 실행여부 감독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동물 물림, 바늘 등에 의한 부상>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은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둠 - 연구실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 (biological spill kit)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 체계 구축 -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여 실험	- 생물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인 사전교육 및 연간교육 이수 - 생물위해성평가 실시 여부 감독 - 생물실험 시설 주변에 대한 정기 소독 등 감염 방지대책 시행 - 생물실험 후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정한 폐기 수립 및 시행 - 생물실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조치
사고 대응 단계	- 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 부위에 식염수나 비상약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혈 시 지혈 - 실험 중인 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보관하거나 병원체를 밀봉하고 부상자의 소독 및 지혈 등을 지원	- 부상 정도 및 병원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지시 - 실험동물 사고 시 파상풍 예방 주사 유무를 확인하고 파상풍 치료 주사 및 항생제 치료

사고 대응 단계	- 생물 안전관리자, 동물실관리자 등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 대응 지시를 받음	- 병원체 사용 사고는 병원체에 의한 2차 획득 감염 관찰 및 예방 치료 - 사고 발생 직후 치료 외에도 획득 감염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여 추가 치료 및 완전 치료를 반드시 확인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원인 조사 - 필요시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윤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실험동물에 의한 감염 사고는 사후 식약처에 사고 보고 - 가축전염병의 유출 시 농림부 검역검사본부에 사고 보고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병원체 유출>

구분	해당 연구실(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은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둠 - 연구실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biological spill kit)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 체계 구축 -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여 실험	- 생물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인 사전교육 및 연간교육 이수 - 생물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감독 - 생물실험 시설 주변에 대한 정기 소독 등 감염 방지대책 시행 - 생물실험 후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적정한 폐기 수립 및 시행 - 생물실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조치
사고 대응 단계	- 생물안전작업대 내 팬을 가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밑에까지 내린 뒤 대피 - 생물 유출 사고 대응도구(biological spill kit)내에서 새 장갑과 1회용 보호구로 착용 후 탈 오염 작업 -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생물안전작업대(BSC) 내부 벽면, 작업대 표면, 이용 도구 및 장비에 도포	-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외부로 유출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위의 생물안전 사고 매뉴얼을 따라 사고 수습 대응 및 지시

사고 대응 단계	- 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생물안전작업대 유출 사고 시 사용한 물질 폐기 - 유출 물질이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연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 대응	
사고 복구 단계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 **기계 분야**

가. 기계 분야 사고 예방법

- 기계 안전장치(방호덮개, 비상정치장치 등) 설치
- 주의사항 게시 및 사용 시 개인보호구 착용

나. 기계 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발견 즉시 사고 기계의 작동 중지
-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겨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절단 사고의 경우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 절단 부위는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도록 넣어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
- 신고

<끼임 및 절단>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기계 안전장치 설치(방호덮개, 비상정지 장치 등) - 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 기계 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사고 대응 단계	-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사고기계의 작동 중지(전원 차단)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 조치 시행 -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젖지 않도록 넣어 빨리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실시 및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 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 **기타 분야**

<화상>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 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에 대한 작동 기능 확인 - 화상치료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사고 대응 단계	- 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 조치 시행 - 화학물질이 액체가 아닌 고형 물질인 경우 물로 씻기 전에 털어 냄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대응 단계	- 가벼운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통증 감소 - 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상처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조치 - 화상 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상처 및 출혈>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 기관 주변 전문병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확보
사고 대응 단계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베인 경우 상처 소독보다 지혈에 신경 쓰고 작은 상처는 1회용 밴드로 감아주고 큰 상처의 경우 붕대를 감은 후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 - 피부가 까진 경우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액 사용	- 필요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사고 대응 단계	- 멍이 든 부위를 얼음주머니나 찬물로 찜질하고 시간이 지나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병원 진료 실시 - 지혈 등 응급조치 시행	
사고 복구 단계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유해광선 접촉>

구분	해당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 · 대비 단계	- 발생원의 격리, 차폐 - 차광장치 설치 - 차광보호구 구입 및 비치 - 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 차광, 차폐장치 이상 여부 점검 - 차광보호구 이상 여부 수시 점검
사고 대응 단계	- 해당 실험장치 작동 중지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기관 내 보건소 또는 병원에 이송 조치	- 사고 접수 및 사고장비(레이저, 용접기 등)의 위험성 확인 - 사고 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등)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 전원 재투입 전에 해당 실험 장치의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 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 **연구실 사고 대응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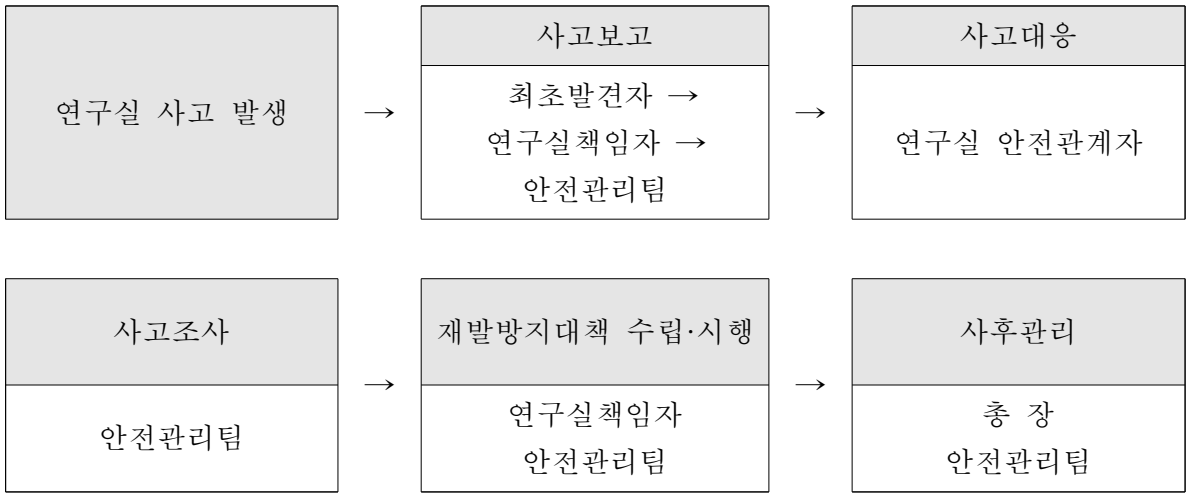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조사)**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총장은 즉시 현장 사고조사반 구성하여 현장 상황 파악
- 사고 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손실되기 전(늦어도 사고 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 의뢰
- 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 사고 발생 일시,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조치현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현장 사고조사반은 사고 조사 후 시정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대책 시행

○ **(사후 관리)**

-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연구활동 중지 명령
- 매년 말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연구실안전점검	10.0	10.0	12.0	32.0	
연구활동종사자 공제가입	15.0	10.0	10.0	35.0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24.5	27.0	27.0	78.5	
계	49.5	47.0	49.0	145.5	

3. 감염병 확산

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교내 감염병 관리조직>

조직		담당부서 또는 직위
감염병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처장단, 보건의료센터장
감염병 대응 본부		
	감염병 총괄관리자	부총장
	감염병 발생 감시자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관리처장, 국제처장, 대외협력처장, 보건의료센터장
	감염병관리 실무반	• 감염병관리 실무반장 : 사무·관리처 부처장 • 행정부서 센터장 및 팀장, 보건의료센터 선임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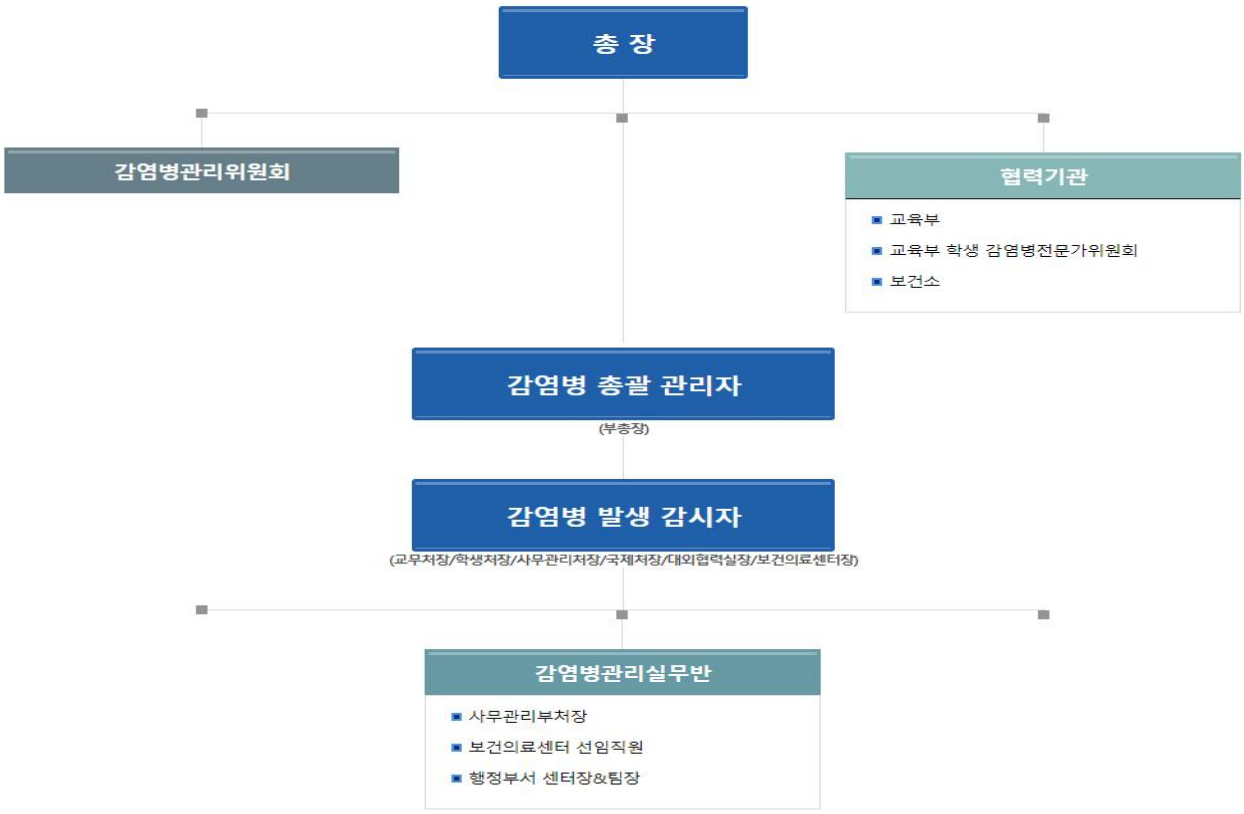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평균
교내 확진 구성원 수(명)	16	216	2,307	846
인명피해(사망)	0	0	0	0

□ 원인분석

○ 질병관리청 발표 결과, 국내 코로나19 감염은 폭증 후 감소 추세이며,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 또한 폭증 후 감소 추세이나, 교내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재유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교내 코로나19 예방관리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기본 원칙)**

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수업 및 수업 외의 각종 활동(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을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부에서 공지한 '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안내' 기준을 준수하여 교내 감염 예방 관리

나.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다.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가.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가.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교내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 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코로나19 관련 교내 신고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내 코로나19 감염 대응관리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나. 유증상자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교내 발열점검체계 구축

교내 발열 구성원의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한 발열점검체계 구축

1) 1단계 : 등교 전 사전진단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스마트숙명/포털 시스템 연계 일일 코로나19 사전 점검 의무화

2) 2단계 : 등교 시 발열점검

교내 주요 장소· 건물 발열감지카메라 설치

3) 3단계 : 등교 후 발열점검

교내 주요 건물 입구 자가발열진단데스크 설치

(체온계, 일회용 장갑, 알콜솜, 발열 시 조치사항 안내 배너 등 비치)

- 발열 구성원 발생 시 대응

1)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방역마스크 착용 후 즉시 귀가 조치 및 선별검사 실시 안내(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방역마스크 착용)

2) 코로나19 관련 교내 온라인 신고 안내

3)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

다.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조치

- 코로나19 확진 시 교내 신고 접수

1) 교내 구성원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교내 신고 접수 또는 교내 보건의료센터로 신고

- 교내 역학 조사 실시

1) 교내 동선 파악

① 확진 구성원의 증상발현 2일전, 무증상인 경우 선별검사 실시 2일 전부터의 교내 동선 조사

② 방역 기간 내 교내 동선 발생 시 자체 소독 방역 실시

2) 교내 접촉자 파악

① 확진 구성원의 증상발현 2일전, 무증상인 경우 선별검사 실시 2일 전부터의 교내 접촉자 조사(마스크 미착용 상태 접촉자 및 동 사무실 근무자)

② 방역 기간 내 교내 접촉자 대상 자가진단키트 배부 및 자가검사 안내 등 조치사항 안내

○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가.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즉시 귀가 및 자가진단검사 실시 안내

-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팀장	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최**	9032, sooyeon@sm.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센터	부장	김**	9268, kkw6509@sm.ac.kr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목적)** 교내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일반범죄로부터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며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함

○ **(사전 대책)**

- 통합보안실 순찰체계 확립
- 외부출입자 중 주취자 및 거동 수상자 신고체계 수립
-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초동 대처 매뉴얼 수립 및 공지
- 경비실 위치 공지
- 화장실 비상벨 및 비명감시시스템 / 비상타워 비상벨 점검 및 공지

○ **(일반범죄 발생 시 대응)**

- 보고체계 따라 보고
- 학생지원센터/총무구매팀 조치

1. 피해자 신고 2. 목격자 신고 3. 비상벨 작동	→	총무구매팀 02)710-9511 학생지원센터 02)710-9268 통합보안실 02)710-9119	→	통합보안실 직원 출동 112 신고 상황 보고

○ **(일반범죄 발생 시 행동요령)**

가. 주변에 주취자/거동수상자 발견 시

-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공유하고 아래 전화번호 또는 숙명save존(오픈 카톡)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혼자인 경우 주취자나 거동수상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합니다.
- 주취자나 거동수상자 주변에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이나 비명감시시스템 또는 비상타워 비상벨을 사용합니다.

나. 위급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화장실이 가까운 경우는 화장실 부스로 피신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비상벨을 누릅니다. 통합상황실에서 작동된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요원이 바로 출동합니다.
- 비상타워가 설치된 주변이면 비상타워의 비상벨을 누릅니다. 통합상황실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요원이 출동합니다. 통합상황실에서 CCTV로 상황을 알 수 있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 주변의 위급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 “무슨 일 있어요” 등 큰소리로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 통합보안실에 전화나 비상벨로 상황을 알리고, 보안실 직원이 출동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합니다.
- 나중을 대비하여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라. 교내 경비실 위치

- 평화문(제1캠퍼스)
- 프라임관(제2창학캠퍼스)
- 중앙도서관
- 중앙도서관 후문
- 사회교육관 * 주간만 운영
- 창업보육센터 * 주간만 운영
- 명재관(기숙사), 인재관, 국제1관, 새빛관

마. 교내 비상벨 안내

- 화장실 비상벨

· 모든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상황실에 경보가 작동하여 해당 위치로 보안실 직원이 바로 출동합니다.

- 세콤 가로등 비상벨

·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상황실에 경보가 작동하여 해당 위치로 보안실 직원이 바로 출동합니다.

· 통합상황실에서 CCTV로 상황을 알 수 있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① 원형극장

② 순헌관 광장

③ 순헌관 동측(명재관 쪽)

④ 르네상스플라자 광장

⑤ 백주년기념관 광장

⑥ 과학관 서측(다목적관 쪽)

⑦ 꽃산달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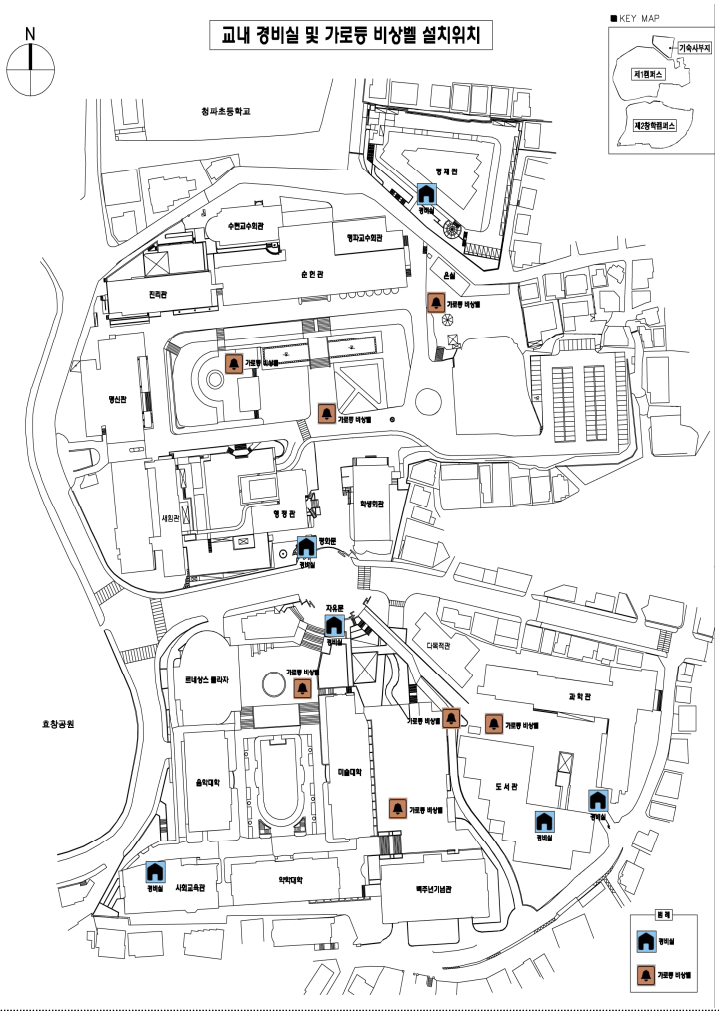

바. 안심귀가 서비스

- 늦은 밤 학교 주변의 불안한 지역을 통과해서 귀가 등 이동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경우 경찰에 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발지에서 112나 02-2198-0191(원효지구대)로 전화하여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 일반범죄 비상연락망

학생지원센터	02)710-9268
총무구매팀	02)710-9511
정문경비실 / 통합상황실	02)710-9219/9119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성평등상담소	상담소장	이**	7260, ptlya@sookmyung.ac.kr	주관부서
팀원	성평등상담소	선임연구원	김**	9938, mhkim0420@sookmyung.ac.kr	

□ 위험요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숙명여자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피해현황

- 숙명여자대학교 관련 규정 제5조(비밀보장)에 따라 사건 발생 및 피해자 건수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 원인분석

○ 교내 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 의무화 제도 마련하고, 신임교원, 고위직 교원 등에 대한 별도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였음.
-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해 피해자·가해행위자가 되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대응 지침을 제공하였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온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함.

○ 성평등 문화제, 기업인턴 및 학군단 훈련생 대상 별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피해 대응 지침 매뉴얼 개발, 대응 지침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캠페인, 사건조사 자문 등에 관해 관할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내외 체계적인 범죄예방 및 대응 기반을 조성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성폭력·성희롱 피해사건에 대한 상담소 이용 절차>

[상담신청] 피해당사자 또는 제3자	→	[상담소] • 방문 • 전화 • 홈페이지 • e-메일	→	• 상담 후 사건 신고접수 -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 신고 가능. 단, 제3자 신고 시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 必 •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① 당사자 간 합의 중재(피해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피신고인이 수용 및 이행)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리(사건조사,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권고) • 사건종료

※ 사건 조사 및 처리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O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O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폭력예방교육		10.0	10.0	10.0	30.0	
성고충 사건처리 및 상담원 교육비		3.6	3.6	3.6	10.8	
성평등문화제 등 홍보/캠페인		4.6	4.6	4.6	13.8	
개인 및 집단상담 등 학생지원비		3.0	3.0	3.0	9.0	
성평등상담연구지		0.5	0.5	0.5	1.5	
사업성	홈페이지 개선비	5.5	-	-	5.5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비	-	3.0	-	3.0	
계		27.2	24.7	21.7	73.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용산소방서	상황대응실			02-6943-1474	유관기관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흄·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 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 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조사

▪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 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 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 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가진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산업안전 대비	0	0	0.6	0.6	
계	0	0	0.6	0.6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김**	9900, wpkim@sm.ac.kr	협조부서
용산소방서	상황대응실			02-6943-1474	유관기관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기본 기획) 설정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 및 개선 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및 권한 부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점검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 및 업무추진

❷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조사팀 구성 및 운영

○ 사고 검토 및 종결,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❹ 체계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❺ 환경조성

○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중대재해 예방	0	0	0	0	
	0	0	0	0	
계	0	0	0	0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상황실장	기획처	처장	오**	7523, mjoh@sm.ac.kr	주관부서
상황반	기획팀	팀장	권**	9092, kyungmi@sm.ac.kr	
행정반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행정반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행정반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21.11.02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사전 대책)**

가.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전파
- 전시 부서별 세부 조치사항
- 전시 행정계획
- 전시 대학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
- 비상소집 및 근무계획
- 비상지출 및 파기 계획
- 전시 민방위대 운영계획
- 전시 상황실 설치 운영 및 보고
- 통신계획

나. 전시 행동요령 안내
- 전시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 민방위대원 편성 및 개인 임무
- 대피소 및 대피로 위치
- 교내 상황실/군/행정관서 신고번호

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 민방위 기본교육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라. 민방위 장비/물자 유지 관리
- 민방위 물자(방독면 등) 구매 비치
- 민방위 물자 보관상태 자체 점검(연 1회 이상)

- 대피소 지정 및 자체 점검(연 1회 이상)

○ (사후 대책)

가. 사고보고

- 재난 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인명피해 : 인명피해 상황 파악 - 총무구매팀, 학생지원센터, 보건의료센터
- 시설물 피해 상황 - 시설종합관리센터
- 기자재 및 집기 비품 피해 상황 - 관재팀

나. 재난 복구

- 총무구매팀/시설종합관리센터에서 유관부서와 협의 시행

다. 보험 청구

- 총무구매팀/시설종합관리센터에서 유관부서와 협의 시행

○ (비상사태 대응)

가.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나. 비상소집 및 근무

다. 비상사태(1, 2, 3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조치사항에 따른 비상근무

라. 전시 학교운영

마. 전시 민방위대 운영

○ (전시 행동요령)

가. 일반 행동요령

- 총장의 비상근무 발령에 따릅니다.
- 등교 여부는 학교의 지시를 따릅니다.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학교, 지역의 통·반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적의 거짓 선전에 속아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 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 경보의 종류
  · 경계경보 :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앰프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 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3초 간격으로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앰프 등의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계경보 행동 요령
  · 경보가 울리면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
  · 지정된 출입구와 대피장소를 확인합니다.
- 공습경보 시 행동 요령
  · 지하대피소 또는 안전한 곳으로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 신속히,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합니다.
  · 신체장애인이나 허약자를 먼저 대피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대피한 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민방위본부의 지시를 따릅니다.

다. 화생방 방호요령

-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의 첫 글자를 딴말로서
  ·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 생물학전은 세균, 전염물질 또는 해충을 퍼뜨리며,
  · 방사능전은 방사능물질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전쟁 행태를 말합니다.
- 화학전은 독성이 강하고 공기보다 다소 무거운 가스로 공기를 오염시켜 일시에 많은 사상자를 내게하고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 화생방 경계경보 시 행동 요령
  · 경보가 발령되면 신체장애 학생 및 허약 학생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방독면, 보호의 등 보호 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고 대피 준비합니다.
  · 대피한 장소는 외부의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화생방 경보 시 행동 요령
  · 옷을 완전히 입어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 장비가 없으면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비옷으로 몸을 가린 후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빨리 벗어나되 바람을 등지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 오염된 학생은 옷을 갈아입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후 피부는 비눗물로 닦아주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한 후 학교 근처 병원(교내에서는 보건의료센터)에 연락합니다.

라. 신고요령 숙지

- 신고해야 할 대상
  · 무장 공비, 간첩, 거동 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폭발물
  · 적의 선전물 또는 불온 문서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맡은 일을 게을리하도록 선전하는 자
· 살인·방화 등의 범죄자
· 징집 및 동원 기피자

- 신고 방법
· 교내는 총무구매팀, 경찰관서, 군부대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 111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 동장, 통·반장 또는 가까운 이웃 사람에게 신고합니다.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유.초.중.고	-	-
	대학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재학생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0-10-18 2021-10-18	1,480	12,398	18,355,080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2021-01-04 2022-01-04	24,555	1,014	24,899,000					
2022	재학생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1-10-18 2022-10-18	1,335	12,126	16,184,830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2022-01-04 2023-01-04	22,569	940	21,214,697					
2023	재학생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2-10-18 2023-10-18	1,263	12,764	16,131,230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2023-01-04 2024-01-04	23,948	1,009	24,163,850					

□ 보상한도

재학생 경영자배상책임보험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신입생 (신입생 OT기간중)	신입생 행사중 상해사망	1억		
	신입생행사중 상해휴유장해	1억		
재학생 (학교시설)	배상책임	1억	3억	
	구내외 치료비	200만원		

교직원단체상해보험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애	사망담보	5천만원		
	휴유장애	5천만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1백만원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종양 치료비 등		2백만원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교육연구시설공제	2022-01-01 2022-12-31	29,288,220	225,294	39,114,790	-	-	-	-	
2023	교육연구시설공제	2023-01-01 2023-12-31	33,792,450	225,283	42,938,160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화재(법정금액)	150,000	1,000,000	
시설소유(관리)자	300,000	1,000,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연구실안전공제(보험)	2021-06-02 2022-06-01	2.8	4,118	11,650	-	-	-	-	
2022	연구실안전공제(보험)	2022-06-02 2023-06-01	4.7	1,582	7,470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요양급여	100,000	100,000	
입원급여	50	50	
장의비	10,000	10,000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korea.kr	주관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취소에 따른 온라인교육)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교직원	2022년	온라인교육	16명(민방위 대상자 전원)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년 시행	미정	교내 구성원	
교직원	2023년 시행	미정	교내 구성원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최**	9032, sooyeon@sm.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센터	부장	김**	9268, kkw6509@sm.ac.kr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05.04.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학생 자치활동 기준 지침	▪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른 새로운 학생 자치활동 지침 안내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종합관리센터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협조부서
팀장	시설종합관리센터	대리	한**	9050, sanguk81.han@sm.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매월 1회 이상	월 1시간 이상	현업 근로자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이**	9052, k893185@sm.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김**	9806, kty1347@sm.ac.kr	
팀원	안전관리팀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이**	9598, lkmne13@sm.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온라인안전교육	연2회	281명	200만원
정기교육훈련	온라인안전교육	연2회	2,026명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신규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온라인안전교육	연2회	-	-
정기교육훈련	온라인안전교육	연2회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신규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보건의료센터	센터장	임**	9572, myim@sm.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의료센터	차장	이**	9147, eklee@sm.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 수칙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공지)	900회	15,241명 참여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	▪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자료 공지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 수칙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공지)	수시 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	▪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자료 공지

6.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성평등상담소	소장	이**	7260, ptlya@sm.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선임	황**	7521, redpros@sm.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2. 4. 11. - 8. 15	4	7,608	10,062,000
	2022. 9. 5. - 12. 30	4		
교직원	2022. 4. 11. - 8. 15	4	2,472	
	2022. 9. 5. - 12. 30	4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성인지 교육훈련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폭력예방교육	2	7,500	10,062,000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4~5	2,50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성인지 교육훈련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 신임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상·하반기 1회씩, 단, 신임교원 없을 경우, 미실시) ▪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7.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구매팀	팀장	조**	9054, taeguk@sm.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구매팀	차장	정**	9391, khchung@sm.ac.kr	
팀원	총무구매팀	과장	정**	9511, jjy126@sm.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재난안전훈련(교직원)	2022년	온라인교육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대면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대상자 재난대응 온라인 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재난안전훈련(교직원)	안전한국훈련	1	전교직원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대피훈련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실시 예정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관계 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 재난 및 안전사고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02-726-2310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청	02-2199-6114	
	02-2199-6300	당직실
서울소방재난본부	02-3706-1319	
용산소방서	02-6943-1474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02-6488-6200	서울지역본부직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02-393-0795	서울서부지사

□ 감염병 확산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질병관리청	1339	
용산구 보건소	02-2199-8012	
	02-2199-8380	원효로 보건분소

□ 범죄 및 비상사태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용산경찰서	182	
원효지구대	02-2198-0191	
국방부	1577-9090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206	민방위 재난통제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i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